

『2025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

지역별 수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주관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7.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의 수출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 전략품목의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사업기간 : 2025. 7. ~ 12. (6개월)

□ 사업규모 : 약 1억원, 2개 수출컨소시엄 내외 지원

□ 사업내용 :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등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협·단체(주관단체)와 과제를 공동 기획·컨설팅하고, 전시·상담회 파견

- 과제별 2단계(사전준비-현지파견)로 지원하며, 상담장 임차료 등 해외 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기 위한 해외마케팅 제반비용 지원

□ 사업 추진일정

구 분	기 간
신청 및 접수	5. 7.(수) ~ 5. 30.(금)
주관단체 평가	6. 2.(월) ~ 6. 18.(수)
최종 선정	6. 20.(금)
예산배정 및 협약체결	6월 말
사업 운영	'25. 7. ~ 12.
결과보고 및 정산	'25. 12.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전 매칭 바이어 현지 상담장 초청, 1:1 수출상담회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사전준비·현지파견 단계별, 홍보관 구성운영비) 지원
 - (1단계, 사전준비) 바이어 사전 발굴, 해외마케팅 및 홍보
 - (2단계, 현지파견)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가
- 지원방식 : 주관단체(수행기관) 총사업비 중 90%를 선지급하며 사업 종료 이후 주관단체·지방청은 중앙회를 통해 사후정산
 - * 사전에 사업비 분담금 비율 고지를 통해 중복지원 방지
 - 적격증빙 지출금액에 한해 최종 정산하며, 미집행액은 반납 조치
- 지원기준 : 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기준에 의거, 단계별 한도 내 지원
 - * 세부 지원항목은 [참고3]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세부 지원기준」 참조

구 분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지원한도	비율
1단계 (사전준비)	·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컨설팅	100만원/업체	-
	· 온오프라인 홍보·광고 및 외국어 공동 카탈로그 등	100만원/업체	
2단계 (현지파견)	· 상담장 임차, 상담장 장치	-	70% 이내
	· 차량임차	-	
	· 통역비	1인/업체	100%
· 물품운송료(1CBM)	편도		
구성운영	· (공통)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출장자(5급) 기준	100%
	· (공통)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업체	
	· 기타 운영비	5만원/업체	

* 상담장 임차, 차량임차, 통역비는 Kotra 단가를 준용하며, '상담장 장치'는 전시 디자인 부스 설치가 아닌 현수막, X배너 등의 구성을 의미

3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 자격

- (주관단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동조합, 협회 등), 및 민간전문기업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수출유관기관 등

※ 지역 협·단체 등 주관단체는 과제 신청 시 지방청 컨설팅 없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주관단체는 반드시 최소 10개사 이상의 참여기업으로 사업을 구성해야 하며, 10개사 미만으로 구성할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 필요
 - 각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참여기업을 구성하며, 사업별 지원 참여기업은 각 지방청 및 주관단체가 모집·선정*

* 「수출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 내 참여기업 평가표 준용

□ 신청 방법

- 협·단체는 관할 지방청과 과제를 공동 발굴·컨설팅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을 통해 [붙임1~2] 제출(6~11p) ※ 신청기간: 5. 7.(수) ~ 5. 30.(금) 18시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 >

-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③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④ 휴·폐업 중인 경우
- ⑤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⑥ 신청한 사업이 지자체 등 타 정부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 ⑦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캐블링 및 베팅업

4

평가방법 및 선정

□ 평가항목 및 방법

- (평가항목) 단계별 사업계획, 전략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등 평가
- (평가방법) 서류평가를 거침
 - (1단계) 사업 지원제외 여부 등 서면평가
 - (2단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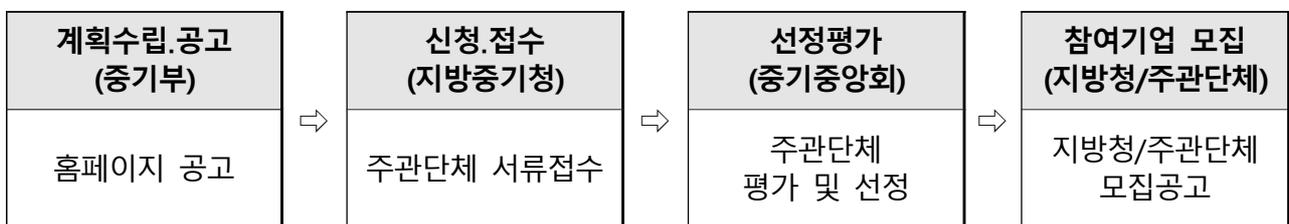
□ 유의사항

- 동일 주관단체는 2개 이상의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에는 최고득점 과제 1개만 인정되고 나머지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단, 지방자치단체, 타 부처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 시 선정에서 제외되며, 사업 시작 이후 중복 지원내역이 적발될 경우 수출컨소시엄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반환 및 회수

5

추진절차 및 문의처

□ 추진절차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과제 컨설팅 등 문의처

지방청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korea.kr)	주 소
서울지방청	채동준	02)2110-6334	chaedj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청	최진희	051)601-5165	amirah2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벅스코 2전시관 3층 371호 수출지원센터
울산지방청	이하해	052)210-0063	hahae7379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대구·경북지방청	권대호	053)659-2245	nicenice66	(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청	임성아	062)360-9192	ahsung4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제주 수출지원센터	강성희	064)753-8757	dlswlksh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기지방청	김정욱	031)201-6945	kjw76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영통동)
경기북부사무소	김택수	031)820-9033	kts1976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청	정상철	032)450-1135	molon68	(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대전·세종지방청	이종택	042)865-6151	leejay	(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청	최상희	041)415-0605	shchoi96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강원지방청	김정미	033)260-1675	jmkim1121	(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퇴계동)
충북지방청	상희라	043-230-5372	huiras	(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정리)
전북지방청	성희준	063)210-6485	shj1713	(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경남지방청	이지은	055)268-2565	zeonyi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신월동)

2. 주관단체

I. 개요	단체(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상근직원수	명		
	설립일				회원사수	개사		
	주소							
	담당자 연락처	부서/직위				담당자명		
		전화				휴대폰		
		E-Mail				fax		
주요사업				전시주최 유무	○ (전시회명 :), X			
II. 수출지원 조직인력	담당부서명				해외조직 유무	○ (국가 :), X		
	인력 및 경력현황	성명	부서(직급)	경력연수	주요경력	관련 자격증		
III. 해외수출 지원사업 실적 *최근 3년 *별지 가능	구분	연도,기간	명칭	참가국(지역)	업체수(부스면적)	예산지원기관		
	(전시회)							
	(상담회)							
	:							
IV. 공동상표	공동상표명	취득일자	참여기업수	공동상표 개요				
V. 공동사업	공동사업명	연간수익	참여기업수	공동사업 개요				

※ 제출자료

1. 주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협단체) 설립인가증 사본, (전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3. 직전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4. 조직도(회원사수, 전담부서 인원수, 해외조직 포함) 및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증빙 1부.
5. 현지수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인증서(해외민간네트워크 등) 사본 각 1부. *해당시
6. 해외수출지원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1부. *해당시
7. 공동사업 수익, 참여기업 증빙자료(협동조합 결산서, 협동조합 참여기업 확인서) *해당시
8. 사업별 예산서(배포된 엑셀 양식) 1부.
9.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기내용은 사실에 바탕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되거나 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붙임 2 】 사업계획서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 계획서

* 사업명 작성원칙 : 개최년도 + 국가명+ 도시명 + 품목
(ex. 2025 독일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1. 수출컨소시엄 개요

사업명 :

추진기간 :

- (1단계) 2025. 00. 00 ~ 00.00 (00일간)
- (2단계) 2025. 00. 00 ~ 00.00 (00일간)

타겟시장 : * 국가 및 도시명 기재

참여기업 : 00개사

참여품목 : 00품목, 00품목

총 예산 : 00천원 (정부보조 00천원, 기업부담 00천원)

성과목표 설정

	목표치	비고 (목표설정 근거 등)
상담액	건, 달러(US)	
현장 계약액	건, 달러(US)	
1년내 예상계약액	건, 달러(US)	

□ 추진일정

단계	기간/일자	내 용	비고
1단계		참가업체 모집	
		바이어 발굴 및 수출컨설팅	
		현지홍보 등	
2단계		현지 운영 *지역별	
		현지 운영 *지역별	
종료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기타 특이사항 :

2. 단계별 운영계획

가) 1단계 (사전준비단계)

□ 목표시장 진출전략

- * 전년도 분석, 목표시장 특성 및 선정 이유
- * 품목 전략(주요 구성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및 국내 수출규모 통계 등)
- * 품목 경쟁요소 분석(가격, 기술, 품질, 마케팅, 유통) 및 주요경쟁국 분석

□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 *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중소기업확인서 必)
- * 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 참가비 계획, 선정 시 시장성 평가 반영여부 등)
- * 업체교육 및 업체수요 반영계획(진행계획 안내, 상담스킬, 상담장·부스연출기법 교육, 부스배정, 협력업체 선정 등)

□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 * 바이어 발굴전략,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 현지 홍보

- * 마케팅 전략(홍보물, 현지광고 등),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포함

나) 2단계(현지파견단계)

현지활동 개요

○ 개최 일자 :

○ 개최 장소 : *상세지역, 전시장명(호텔명)

○ 전시회(상담회)명 :

- 상담장 계획

	기본 면적 (sqm)	업체수	총 면적 (sqf,sqm)	업체부스	홍보부스
				(sqm)	(sqm)
신청 주관단체					
타 정부기관, 지자체					
개별 참가					

전시부스·상담장 운영 *해당 내용만 참고

* 전년도 분석(상담장 도면, 상담장 사진 등) *해당 시

* 금년도 개선방안(상담장 구성, 업체수요 반영방안) *해당 시

* 상담장 디자인연출, 제품디스플레이 방안 등

* 사전예약·임차 여부, 임차료 지급여부, 임차방법(개별기업 임차, 주관단체 일괄임차)

현지 파견일정 *일자별 작성

일 자	국가, 지역	주요 내용	비고

3. 주관단체 운영 계획

참여기업 지원방안

- * 주관단체 역할 분석, 차별화된 참여 중소기업 지원방안
- * (상담회) 공동마케팅 활동 개선방안
- * 바이어 데이터 관리 및 최신성 유지 방안
- * 주관단체 역량강화 계획
- * 주관단체 해외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현지 수행사 현황

* 2개 이상의 수행사가 있는 경우 모든 수행사 현황을 작성

수행사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구분	<input type="checkbox"/> 코트라 <input type="checkbox"/> 해외민간네트워크 <input type="checkbox"/> 전문무역상사 <input type="checkbox"/> 업종별 협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보유사				
관련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기간	참가국, 지역	참가 업체수	주관기관 (지원기관)

※ 해외민간네트워크, 전문무역상사 등의 인증·허가가 있는 경우 사본 첨부

※ 정부기관 또는 현지국가의 업종단체를 현지수행기관으로 할 경우 사업추진부서 현황 및 마케팅 지원실적 작성 불필요

○ 수행사 인력현황 * 조직도 본문 삽입 또는 별첨

성명	부서(직급)	경력연수	주요경력	관련 자격증

4.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협업 계획

5.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 표준협약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검토기관”이라 한다),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_____ (단체명) (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2025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_____ (사업명)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주관단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주관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기간)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주관단체”간의 협약 기간은 주관단체 선정일로부터 사후정산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및 시행) ① “주관단체”는 「수출컨소시엄사업 운영지침」 과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 “주관단체”는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에 협의하여 정부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참여기업의 성과제고 및 국위선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주관단체”가 사업을 성실히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절차를 점검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주관단체”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단체”는 정부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사업관련 홍보제 작물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CI를 표기한다.

⑤ 참여기업은 신의성실로 사업을 수행하며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주관단체”의 사업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 (사업비 조성 및 보조금 교부) ① 수출컨소시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참여기업 및 “주관단체”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전액 현금으로 분담한다.

②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주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관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검토, 조정하여 보조금을 주관단체에 교부한다.

③ “주관단체”는 국고 보조금과 참여기업의 부담금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④ “주관단체”는 참여기업 부담금 산정내역을 사전에 참여기업에 문서(서면, 이메일 등)로 교부하고 관리기관의 사후정산이 확정된 이후 정산결과 교부해야 한다.

⑤ “주관단체”는 “참여기업에게 사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제6조 (이행보증보험) ①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주관단체”의 세부프로그램 추진계획에 대해 승인한 후, 지원금의 교부를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급 시, 보증기호는 정부지원금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사업 수행기간에 4개월을 가산한다.

③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미발행·오발행을 사유로 “주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연·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반납 및 환수) ①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주관단체”로부터 완비된 정산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단체”에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정산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이자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10일 이내에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은 지원금 교부 제외 사유발생 또는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단체”는 “관리기관”과 “검토기관”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환수 요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지원금의 반환을 완료해야 한다.

⑤ “주관단체”가 참여업체 모집실패 등으로 사업을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교부금 전액 및 이자 발생액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임차비 등 기집행된 자금의 처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일방 당사자의 손해는 타방 당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0조 (재판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 및 재판의 관할은 “관리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주관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주관단체”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원본 3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과 “검토기관”, “주관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수출컨소시엄명)

○ (주관단체) _____ (대표자) (인)

○ (검토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 장) (인)

○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인)

【 붙임 4 】

기업 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귀하

귀 회와의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귀 회가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기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수출컨소시엄 참여라 함은 수출컨소시엄 신청·계획수립·참여기업모집·사업관련 정보수집·정보제공·예산교부·사업수행·결과보고·사후관리 등의 업무와 동 사업과 관련한 부수업무(금융정보, 신용정보, 신용조회, 요청자료 작성 등)와 관련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필수/선택)	<p>[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컨소시엄 사업 참여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로서 사업 수행의 설정·유지·이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관세청에서 통관자료 등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단,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수출컨소시엄 제도변경 통지,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 처리 <p>[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컨소시엄의 홍보, 조사와 본회 사업의 홍보·조사·가입 및 이용·판매 권유 등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 국적·직업·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업식별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단, 활용 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수출액에 한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여신거래에 한정) :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p>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 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수출컨소시엄 사업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본회의 리스크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보는 사업참여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수집·보유·이용됩니다.)</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로서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컨소시엄 참여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수출컨소시엄 참여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 동의여부(필수/선택)	<p>[필수]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선택]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동의 여부(필수)	<p>[필수] 귀 회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청렴·윤리경영실천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렴·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당해 사업에의 참여가 중소기업 고객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직무를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고객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중소기업 고객 및 직무관련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관단체명)

(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참고 2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평가 기준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선정 평가표(주관단체)

구 분	하위항목	배점	평가구분					평점	
사업계획 (30)	○[1단계] 사전 준비/교육 - 목표시장 진출전략(경쟁요소 분석 등) - 기업모집, 교육전략(부스연출, 상담기법 등) - 바이어 발굴, 매칭 계획 - 현지 사전마케팅 계획	1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가 평가	
			12	10	8	6	4		
	○[2단계] 현지파견 - 상담장 위치, 디자인, 현지화전략 - 상담장 운영계획 - 세부 파견일정 - 업체수요 반영 계획	18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8	14	10	6	2		
전략성 (20)	○(전시회/상담회) - 현지수행사 역량 - 품목 전략성 - 신시장·신품목 개척 노력	2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6	12	8	4		
주관단체 운영능력 (40)	○예산 및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보유 등 운영능력의 적절성	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량 평가	
			5	4	3	2	1		
	○정부, 지자체 해외마케팅 사업실적 (최근 3년)	5	5회 이상	3회 이상	1회 이상	없음	-		
			5	4	3	2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겸직 제외)	전담인원수	2.5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전담인원 경력 평균기간	2.5	8년 이상	6~7년	4~5년	2~3년		2년 미만
○주관단체 성과평가 결과*		25	상위 1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5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60% 초과	외부 용역 기관	
			25	23	21	19	17		
협업계획 (10)	○지자체·타기관과의 협업 노력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정성 평가	
			10	8	6	4	2		
가감점 (±10)	○ 가점 - 참가전시회 정보(Review) 작성여부(+1점) - 주관단체별 전년도 사업 참여기업 수출 실적 합계 증가율이 전전년도 대비 20% 이상인 경우(+1점) ○ 감점 - 사업취소 중도포기(각 -3점) - 참여기업 민원 접수(각 -2점) - 주관단체별 전년도 사업 참여기업 수출 실적 합계 증가율이 전전년도 대비 감소 했거나 없는 경우(-1점)	±10	*감점제외 천재지변, 해당국가 소요상황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업취소, 중도 포기한 사례로 관리기관이 승인 하는 경우 감점 제외						
합계		100							

* 신규단체 성과평가 점수는 중간점수(21점) 적용

** 관리기관 개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한 경우는 제외

*** 사업 공고문에 따라 향후 세부내용 변경 가능

참고 3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세부 지원기준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해외전시회 세부 지원기준

단계	지원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 고	
사전 준비 단계	■ 사전 B2B 마케팅	-	100만원/업체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추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업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현지활동단계기간 포함)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소기업·중소기업중앙회 CI 표기	
현지 활동 단계	■ 전시장 임차	70% 이내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4부스(총 36㎡)까지 지원	
	■ 전시장 장치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 장치고도화 계획을 관리기관에 사전제출, 전시 부스 디자인 검토 및 승인 후 최대 100%까지 지원	
	■ 차량 임차		-	·Kotra 무역사절단 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통역비		1인/업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 기타 마케팅 활동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 물품운송료		100%	해상운송 1CBM 편도	·전시물품에 한함(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에 준하여 적용
구성 운영 단계	■ 공동홍보부스	100%	-	·1부스 이내(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 승인 必) ·전시회 정책상 품목별 별도 홍보부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최소 각 10개사 이상일 때 추가 홍보부스(1부스) 지원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	
	■ 회선임차		-	·인터넷 2회선 이내	
	■ 통역비		1인/단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역할: 주최측, 현지유관기관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 물품운송료		해상운송 1CBM 편도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 (1CBM이내)	
	■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불임> 국외여비 기준 한도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 항공료는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간담회비(국내/국외)		-	5만원/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기타 운영비		-	5만원/업체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방역용품,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 이행보증보험증권료		100%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수출상담회 세부 지원기준

단계	지원금의 집행항목	비율	한도	비 고
사전 준비 단계	■ 사전B2B 마케팅	-	100만원/ 업체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상담회 前 온라인 상담 ·바이어 상담 스킬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 해외마케팅.홍보		100만원/ 업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현지활동단계기간 포함)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CI 표기
현지 활동 단계	■ 상담장 임차	70% 이내	-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 임차료 준용, 실비 인정
	■ 상담장 장치		-	·상담장 구성(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 임차		-	·Kotra 무역사절단 차량임차단가 준용하여 실비 인정 * 파견기간 + 최대 2일, 업체별 차량임차 불인정
	■ 통역비		1인/업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 기타 마케팅 활동		-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임차료, 강사료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 물품운송료		100%	해상운송 1CBM 편도
구성 운영 단계	■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100%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불임> 국외여비 기준 한도 ·항공료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 항공료는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통역비		1인/단체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역할: 현지유관기관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 물품운송료		해상운송 1CBM 편도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 (1CBM이내)
	■ 간담회비(국내/국외)	-	5만원/ 업체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기타 운영비	-	5만원/ 업체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방역용품, 사업용 문구비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 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 이해보증보험증권료	100%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사업비의 15%(공동홍보부스, 회선임차비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견규모 및 파견지역별 차등 교부 가능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장치고도화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 전시장 임차 : 최대 4부스(총 36㎡ 한도) 지원 가능
- 전시장 장치 : 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 지원 (기준단가 이내 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70%)
- 공동홍보부스 : 2부스 이상(1부스 최대 12㎡) 지원 가능, 파견규모 16개사 이상 파견 시 최대 4부스 지원 가능, 사이니지(영상디스플레이), 홍보(통역)도우미 1명 지원가능

* 예산 집행 시점의 실환율 적용하여 정산

* 주관단체는 통역비 등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마케팅비, 참여기업 확대 등으로 활용 가능(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참고 4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사업 정산 제출서류

수출컨소시엄 정산시 제출서류

단계	집행항목	제출서류 및 검토사항
사전 준비 단계	■ 사전B2B 마케팅	○ 용역계약서(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내역 포함),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등 ○ 발굴 바이어 리스트, 매칭스케줄표, 미팅 사진 및 상담일지 전체 ○ 시장조사보고서, 컨설팅보고서, 감사료 수령증(내부 지급기준 첨부), 임차료 영수증, 세미나 자료, 사진 등
	■ 해외마케팅.홍보	○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실물증빙
현지 활동 단계	■ 전시·상담장 임차	○ 견적서(invoice),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환율증빙 ○ 전시·상담장 레이아웃(배치도), 참여기업별 상담 사진 (부스번호, 업체명, KOREA 및 중소기업중앙회 BI 노출 필수)
	■ 전시·상담장 장치	○ 용역계약서(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내역 포함), 견적서, 복수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환율증빙
	■ 차량 임차	○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환율증빙, 증빙용 사진
	■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 용역계약서(과업내용 및 비용산출 내역 포함),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환율증빙 등 ○ 매칭스케줄표, 미팅 사진 및 상담일지 전체
	■ 통역	○ 통역원별 신분증, 수령증(행사명, 서명, 기간, 금액, 연락처 포함), 통역원 식별 가능한 현장상담 사진, 환율증빙
	■ 물품운송료	○ 해상운송 1CBM당 단가표, 참여기업별 세부 운송 내역,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복수견적서
	■ 기타 마케팅 활동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완료된 사항만 인정	○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감사료 수령증, 감사료지급 내부기준, 세미나 자료, 세미나 사진 등 * 이외 마케팅 활동시 영수증,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구성 운영 단계	■ 공동부스	○ 전시·상담장 임차료 및 장치비와 동일 * 기업별 임차료 및 장치비 INVOICE에 포함시 제출 불필요
	■ 회선임차	○ 견적서(invoice), 영수증(송금증), 환율 증빙
	■ 통역	○ 통역원 신분증, 수령증(행사명, 서명, 기간, 금액, 연락처 포함), 통역원 식별 가능한 현장활동 사진, 환율증빙
	■ 물품운송료	○ 해상운송 1CBM당 단가표, 주관단체 물품 세부 운송 내역,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송금증), 복수견적서
	■ 주관단체 항공료, 출장비	○ 견적서(invoice), 이티켓(항공권 실물), 영수증(송금증), 여권사본 * 현지 철도 이용시 운임료 영수증
	■ 간담회비(국내/국외)	○ 간담회 사진, 서명부(국내간담회), 영수증
	■ 기타 운영비	○ 영수증(문구비, 팩스비, 발송비, 다과비 등) * 참여기업 설명회 비용 인정(회의실 임차료 등), 국내 출장 대중교통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불인정(식사 등)

※ 공통사항

- 사업통장 : 전체 거래내역 사본 제출, 외환통장 사용시 외환통장 거래내역 사본 제출
- 환율증빙 : 외화거래시 결제시점의 외환은행 고시환율, 외화송금시 환율 등
3국 통화 거래시, 원화-달러-3국 통화 송금(결제) 시점의 환율증빙 첨부
-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송금증 등만 인정
- 통신비는 주관단체 출장비 중 일비로 지출(지원 없음)

※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관리기관 및 회계법인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